
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

피해자	① 성명	김지훈	② 생년월일	1976. 12. 20.
	③ 주소	서울시 구로구 부일로9길 127, 113동 804호		
	④ 신고일시	2024년 7월 9일		
피해보상금 산정결과	⑤ 피해지역	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667-23		
	⑥ 피해면적	900m ²	⑦ 가해야생동물	멧돼지
	⑧ 피해내용	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(고구마)		
	⑨ 피해보상금 산정내역	고구마 1,616원/m ² × 900m ² × 80% × 60% (피해면적) (피해율)(생육단계)		
	⑩ 피해보상금	698,000원(천원이하 절사)		
기타 의견	야생동물(멧돼지)에 의한 피해사실 확인,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.

2024년 7월 17일

서산시장